

군포도시공사 제9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2020년 10월 15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7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의 “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20조의 “동일 직종 및 직급의 범위 안에서”를 “직원을”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종별 직급 및 직위(제15조 관련)

업무직	-	담당
-----	---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
	담당 성명 (전화번호)	이 태 권 (390-7615)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수습임용) ①신규로 채용된 직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p> <p>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및 인력수급상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사장이 판단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생략> 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14조(수습임용) ①-----</p> <p>-----.</p> <p>다만, -----경력자 또는 -----</p> <p>-----.</p> <p>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겸직) 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u>동일 직종 및 직급의 범위 안에서</u> 겸직시킬 수 있다.</p>	<p>제20조(겸직) ----- 경우 <u>직원을</u> 겸직시킬 수 있다.</p>

현행

[별표 1]

직종별 직급 및 직위(제15조 관련)

직종	직급	직위
일반직	2 급	본부장, 부장, 팀장
	3 급	본부장, 부장, 팀장, 담당
	4 급	
	5 급	부장, 팀장, 담당
	6 급	담당
	7 급	
기능직	1 급	부장, 팀장, 담당
	2 급	담당
	3 급	

개정안

[별표 1]

직종별 직급 및 직위(제15조 관련)

직 종	직 급	직 위
일반직	2 급	본부장, 부장, 팀장
	3 급	본부장, 부장, 팀장, 담당
	4 급	
	5 급	부장, 팀장, 담당
	6 급	담당
	7 급	
기능직	1 급	부장, 팀장, 담당
	2 급	담당
	3 급	
<u>업무직</u>	=	<u>담당</u>